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3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이형석·주철현·허 영

안규백 · 임호선 · 이용빈

송옥주 · 이병훈 · 양기대

진성준 · 맹성규 · 홍익표

이광재 · 한병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 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되 제재 의 기준액은 조합의 경우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 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1년간의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 이상"을 각각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 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 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 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중 "한다)로"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 |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 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 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 지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 요청하여야 한다. 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 3천만원 이상(지 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 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 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 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 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1. ~ 4. (생 략)

④ (생략)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 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 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 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 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 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 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 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u>0 10 0</u>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0 46 10 114 110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 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 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 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③ (생략)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
금액 이상(지방세조
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_

----- 금액 이상(지방세 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 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 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 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 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 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 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 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 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 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 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 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 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2 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u>인 체납자에</u> 대해서는 「지방 세기본법 | 제147조제1항에 따 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 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 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 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u>공개</u>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
개할 수 없다.
②
-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u>방세조합장</u>
4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⑥ (생략)

<u><신 설></u>

제71조(공매) ① ~ ③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	제2조제1호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고액체납자의 거래정
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
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
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
<u>할 수 있다.</u>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 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 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 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 리<u>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u>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u>한국자산관리공사가</u>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5항에 따라 <u>한국자산관리</u>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에 제6항에 따른 <u>한국자산관리</u>
 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 ⑨ 제5항에 따라 <u>한국자산관리</u><u>공사가</u>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술상소 또는 시망세소압 <u>으</u>
로 본다.
⑦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는 지방세조합이
⑧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
⑨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